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5년10월12일

총무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9월 27일 삼척시장 제출

나. 위원회 회부일자 : 1995년 9월 27일

다. 심사일자 : 제8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95.10.9)상정 · 심사후 보류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95.10.12) 심사 · 의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이용문)

가. 제안이유

- '95. 5.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공포시 중요재산의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기 위하여 우리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규정되어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완전히 삭제하고, 기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 일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고,

이 경우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토록 함.  
(안 제36조의 2)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읍면지역에서는 당초 400㎡에서 700㎡로 확대함. (안 제38조 제1호)
-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38조의 2)
- 관사운영비중 보이라 운영비, 응접셋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전화요금등을 1급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2급관사까지로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함.  
(안 제55조)

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비교 : 별첨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홍성용)

-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 범위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중요재산조항을 삭제하고,
-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 조항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 신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확대등 조례안의 일부 개정내용은 상위법과 이중으로 규정된 조문의 일부 삭제와 기타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실히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N.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p>○ 개정조례안을 보면 의회가 재산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약해지고 집행기관은 강화된 것이 아닙니까 ?</p>	<p>○ 중요재산의 범위중 일정면적과 규정 이상이 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의회의권한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음.</p>
<p>○ 중요재산의 가액이 2억5천만원, 면적이 5,000 m<sup>2</sup>로 공시지가를 다른 대도시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으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일률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p>	<p>○ 공시지가가 다른도시와 차이는 있으나 중요재산의 범위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규정을 무시할 수가 없음</p>
<p>○ 관사 매각계획안을 제출해놓고 관사 관리비를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p>	<p>○ 관사처분은 계속하고있으나 관사1동은 관리하게 되며 관리하는 관사에 적용 시키는 것임.</p>
<p>○ 재산취득과 처분대상이 얼마나 되며 처분재산에 대한 금액은 일반예산에다 편성해서 사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p>	<p>○ 자세한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으며 처분재산은 가능한 대체재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사업추진시 재원이 부족할경우 먼저 사용하고 별도로 확보하고 있음.</p>

## V.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이원훈의원, 임동순의원)

- 의회 고유권한 약화를 초래하는 개정조례안이며, 관사를 전부 매각하면서 관사관리를 2급관사까지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발상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 요구함.

## VI.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10월12일 임동순위원외 6인

나. 수정이유

- 전면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사운영비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다. 수정내용

-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5조의 신설조항인 제6호 전기요금, 제7호 수도요금 등 2개조항을 삭제하고, 제8호를 제6호로 함.

라. 수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 ..... ..... .....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 ..... ..... .....

라. 수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현행	개정안	수정안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보이라운영비(단, 1급관사에 한함)	3. .... (단, 1, 2급관사에 한함)	3. (개정안과 같음)
4. 응집세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관사에 한함)	4. .... ..... .....(단, 1, 2급관사에 한함)	4. (개정안과 같음)
5. 전화요금(단, 1급관사에 한함)	5. .... (단, 1, 2급관사에 한함)	5. (개정안과 같음)
6. ~8. (신설)	<u>6. 전기요금(단, 1, 2급관사에 한함)</u>	<u>&lt;삭 제&gt;</u>
	<u>7. 수도요금(단, 1, 2급관사에 한함)</u>	<u>&lt;삭 제&gt;</u>
	<u>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 2급관사에 한함)</u>	<u>6. (개정안 8호와 같음)</u>

VII. 심사결과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기타사항

- '95.10. 9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중요재산조항 삭제문제와 관사운영비부담중 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신설조항 문제점 제기로 의사일정 변경후 회기중 다시 상정 심사키로 의결하여 '95.12.12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다시 상정 심사